

生活 상담

再婚後 得男、入籍애로



【문】본인은 의항선원으
로 지난 75년 이혼한후
76년에 재혼, 5세남 아
들이 있으나 호적에 입
적이 안돼 고민중에 있
습니다.

입적이 안되는 이유는 재혼한 아내가
이혼녀임을 알았으나 사실은 별거중인 여
자로서 호적상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니다.

그러던중 재혼한 아내의 전남편이 사람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입적시키려
했으나 구청에서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전
남편의 부인으로 있을때 낳은 자식이기때
문에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들로써 입적시킬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요. <崔光旭·부산中구忠武동>

【답】귀하의 경우 친생관계확인 의 소를
제기하여 그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구청
호적계에 제출하면 친생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賃든 사람이 행방불명

【문】3개월전에 방 1칸을 전세10만원에
월세 3만원으로 세를 주었는데 세든 사람
이 월세는 한푼도 주지않고 3개월을 지
내다 전세에서 남은 돈 1만원을 받아가지
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져가지않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출수없는 딱한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원제·부산釜山鎮구楊亭동
19.16>

【답】귀하의 경우 세금을 다른곳에 보관하
고 그방을 세놓으면 됩니다. 만약 다른곳
에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예를들면
부패가능성 또는 보관비용의 과다) 그물건
을 상당한 값으로 저분하여 그 매각대금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 手數料부당(?)

【문】81년 6월 海雲峯 A I D 아파트를 매각
한후 매수인과 함께 등기를 하기위해 사
법서사에 갔더니 주소변경건으로 7천1
백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변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
을 당시 (77년)에 사용하던 통·호수를 80
년 4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의해 번지로 바
뀐 것을 말하는데 매입때의 주소와 매각
때의 주소가 틀린다는 이유로 7천1백원을
불러야한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徐현주·부산海雲峯구中2동 A I D 아
파트 20의504>

【답】귀하의 경우 등록세 2천원·방위세 4
백원·인지대 50원의 비용과 기타 수수료
를 포함하면 7천1백원의 비용은 타당하다
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한 주
소변경이라면 등록세는 면제될것입니다.

집산후 登記안고 死亡

【문】68년 아버지가 지금 살고있는 집과
이에 딸린 약간의 대지를 매입했으나
유권 이전절차를 밟지않고 지내다 그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니다. 집이 너무 낡아 개축을 하려해도
소유권자가 아니기때문에 개축허가가 나
지않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전등기가 가능하
겠습니까.

<李중태·부산 海雲峯구石埕동492>

【답】귀하의 경우 원주인의 상속인을 상대
로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이소의 승소판결을 받아
귀하의 명의로 할수있으니 가까운 법률사
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盧武鉉변호사>